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고엽제2세환자 수당 배우자 승계〉

■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05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12. 9.
3. 회부일 : 2024.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망 시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권리를 그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 이 경우 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u>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이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이라 함)은 중증도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는 월 59.6만원~123.4만원씩,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월 137.1만원~219.8만원씩 지급¹⁾하고 있으며, 지급대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상 인원은 2025년 2월 기준 각각 31,465명, 200명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현황(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고도	중등도	경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1,234	909	596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2,198	1,707	1,371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수급권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의 배우자 승계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사망 시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공은 직무 수행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²⁾으로, 신체적 희생이 있어도 비교적 경미한 등급인 상이 7급에 대해서는 유족 보상금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또한, 신체적 희생 없이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의 경우도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직무수행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동일하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개정안 부칙에서는 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이전에 사망한 수당 지급 대상자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³⁾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4,084억 6,200만원(연평균 816억 9,200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

2) 현행 보훈보상제도는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희생을 입지 않았으나 공적이 있는 분들(예: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예선양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이 갖는 보상수급권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에 따라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임.

3) 고엽제후유증2세환자(2024.11월 179명)는 평균 연령 46세로 추계기간 동안 사망인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엽제 수당 수급권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서 제외함(국회예산정책처)

자 및 7급 상이자도 형평성을 이유로 배우자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권 승계 배우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	3,290	3,563	3,859	4,179	4,526
신규미망인 발생인원	2,372	2,569	2,782	3,013	3,263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	2,372	4,749	7,147	9,581	12,068

주: 1)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은 2023년 사망인원에 최근 3년간 사망인원 증감률 8.3%를 적용하여 추정

2)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은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

3)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는 2026년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개정안에 따른 최초 수급권 승계 배우자로 가정한 후, 다음연도부터 전년도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에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한 후 당해연도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합산함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명)	2,372	4,749	7,147	9,581	12,068	-
월 지급단가(천원)	841	879	919	960	1,003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23,939	50,091	78,812	110,370	145,250	408,462

주: 고엽제후유증2세환자(2024.11월 179명)는 평균 연령 46세로 추계기간 동안 사망인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엽제 수당 수급권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서 제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다른 보훈보상대상자와의 형평성, 안 부칙 적용례의 적정성 및 국가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체계 자구와 관련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정안은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나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⁴⁾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들의 예와 같이 수당을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도 법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5.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에서는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로 인해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및 유가족을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⁵⁾하고 있으므로, 보훈관계법령상 유가족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8조⁶⁾에 따른 법 적용 배제 대상⁷⁾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 노출과의 상관성이 밝혀지지 않는 반면, 사회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질병치료 및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한시적으로 본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것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6)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현행 제도 상 그 예우 대상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등으로 한정되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환자의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수당 지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현 보훈보상체계에서 직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각종 수당⁸⁾은 일신전속적으로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며,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8)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